

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(간호직)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「지방 공무원법」제35조 및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8일

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선발예정인원 : 49명

시험 방법	직급	직렬	직류		선발예정 인원	임용예정기관			비고
						인천시 및 8개 구	강화군	옹진군	
공개 경쟁	8급	간호	간호	일반	49	47	2		필기시험 4.30.(토)

나. 공통 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, 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
- 거주지 제한

가.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.

1.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
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 2.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,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- 단, 강화군 응시자는 아래 강화군 주소지 요건을 따라야 함.

<강화군 간호 직렬>

☐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.

1.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2.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,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참고사항

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.
-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,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.
-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.
-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,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.

○ 응시결격 사유(적용기준일 :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◇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◇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◇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◇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다. 자격 및 학력(경력) 제한 : 간호사, 조산사

-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준일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

2 시험과목

직급	직렬	직류	시 험 과 목
8급	간 호	간 호	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

※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3 시험방법

가. 제1차.제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당 20문제, 4지 택1형)

○ 시험시간은 100분(10:00~11:40)입니다. 과목별 20분(1문항 1분 기준)

나. 제3차 시험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
- 제1차.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'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'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.
- 면접시험 관련 인.적성검사 및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원서 접수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2.21.(월) 09:00 ~ 2.25.(금) 18:00 (기간 중 24시간 접수) [취소마감일 : 2.28.(월) 24:00까지]	필기시험	4.20.(수)	4.30.(토)	5.13.(금)
	면접시험	5.13.(금)	5.23.(월) ~ 5.31.(화)	6.10.(금)

○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(<http://gosi.incheon.go.kr>)에 별도로 공고합니다.

5 응시원서 접수안내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처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
 -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(<http://gosi.incheon.go.kr>)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
 -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
- 접수시간 :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(단, 접수 시작일은 09:00부터, 마감일은 18:00까지)
 - ※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:00까지 가능합니다.
- 접수 및 취소 문의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(☎1522-0660)
- 기타사항

- 응시수수료(8.9급 5,000원)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됩니다.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나. 응시원서 사진
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형식)이 필요하며,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 -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의 JPG 형식,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.
 - 사진배경, 선글라스 착용,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함.

다. 원서접수시 유의사항

-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(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)
-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,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(휴대)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, 원서접수(취소)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 - ※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,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. (분실 시 재출력 가능)
-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(장애)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정기한 내에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붙임「장애인 편의제공 내용」에서 반드시 확인하고,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가. 대상시험 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~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

나. 채용목표 :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%

-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,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

다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

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(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-3 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

7 가산특전

가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	가산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	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자격증 소지자	직렬별 가산점	과목별 만점의 3% ~ 5%	· 자격증 1개만 인정(간호직은 해당없음)

※ 가산점 합산방법 : [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] + [공통적용 가산점 1개] + [직렬별 가산점 1개]

나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.

다. 의사상자 가산특전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6조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합니다.
-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의사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8)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.

라. '나'항과 '다'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

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『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**하여야 합니다.(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)
 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(10% 또는 5%)과 보훈번호 입력
 -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(5% 또는 3%)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
- ※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번호)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.

8 기타사항

가. 강화군 구분모집은 자체 면접시험 실시

- 강화군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최종합격자는 강화군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강화군에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 기관인 강화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추가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다. 필기시험 성적 확인

-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(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)

9 응시자 주의사항 등

-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(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)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

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-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는 반환하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, 답안지,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, 자격 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**강화군은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(전보)될 수 있습니다.**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의 계속'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대응하여 각 시험 단계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여 장소 공고 시 응시생 준수사항을 별도 공지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포함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월말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**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담당부서 현황>

구 분	시험담당부서	주 소	우편번호	홈페이지	전화번호 (032)
인천시 8개구 (강화군)	인천광역시 인사과 (인재채용팀)	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	21554	www.incheon.go.kr	440- 2533~6
강화군	강화군 행정과 (행정팀)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	23031	www.ganghwa.incheon. kr	930-3234

※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: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(<http://gosi.incheon.go.kr>)